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 제정일 : 2011. 2. 21.
- 개정일 : 2012. 2. 27.
- 개정일 : 2012. 9. 6.
- 개정일 : 2013. 2. 20.
- 개정일 : 2013. 12. 20.
- 개정일 : 2014. 3. 20.
- 개정일 : 2015. 3. 3.
- 개정일 : 2016. 2. 25.
- 개정일 : 2017. 2. 24.
- 개정일 : 2018. 3. 7.

1. 개요

1. 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 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이 지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작성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다. 원장은 기금자산의 운용 현황과 주가, 환율, 금리 등 제반 경제지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지침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1년 단위로 이 지침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이 지침은 기금자산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사람에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 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 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등 기금관련 법령의 준수여부와 기금운용 관리 책임의 완수여부, 기금 관리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나. 이 지침은 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용체계, 적정 유동성 규모,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 등을 설정·제시 한다.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기금은 「국가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다. 원장은 법령,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이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자산운용의 원칙

가. 기금의 자산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나. 기금의 자산은 기금 부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 원장은 자산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 수익률 및 자금수지분석을 통한 적정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체계

4. 1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나.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2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기금담당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은 과기정통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과기정통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진흥원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에게 별도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안건 검토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산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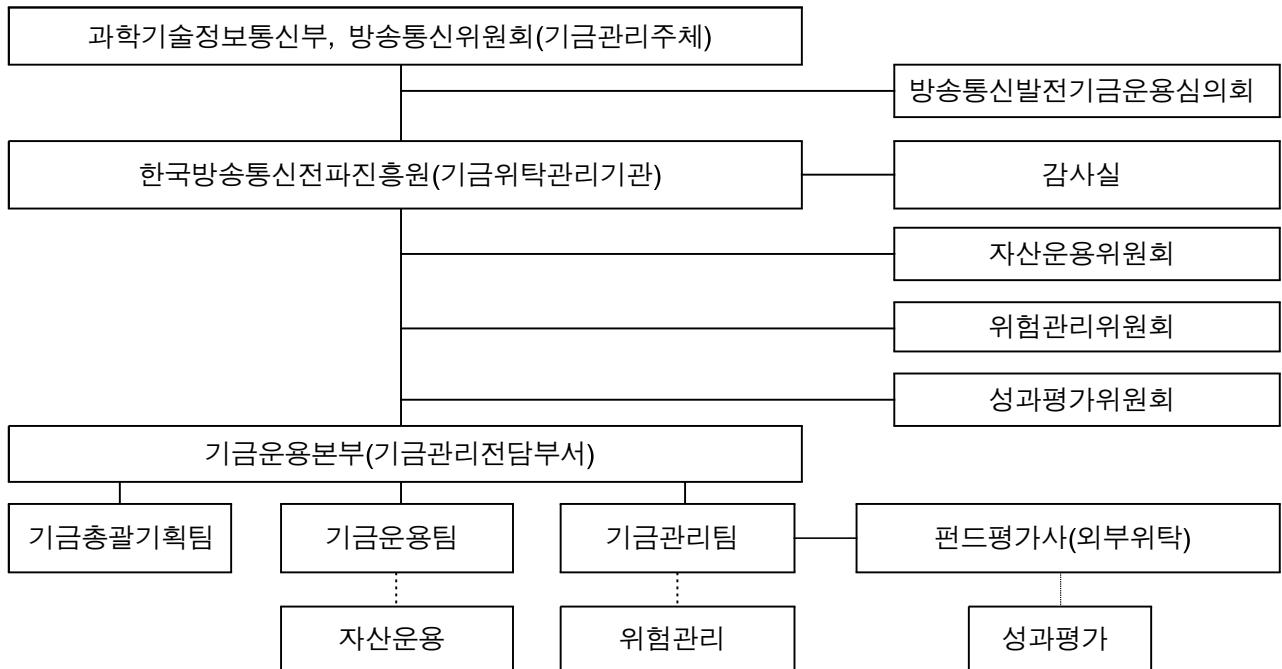
다. 위험관리위원회

- 자산운용에 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둔다.
-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의 위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외부전문가를 선정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진흥원 소속 직원과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진흥원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험관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라. 자산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진흥원은 자산운용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 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외부전문가를 선정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진흥원 소속 직원과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진흥원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자산운용 성과평가 결과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한다.
 -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마. 기금운용본부
- 기금의 관리와 자산 운용은 진흥원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한다.
 - 기금운용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 자산의 관리 및 운용
 - 위험한도 설정 및 위험 관리
 -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탁관리
 - 그 밖에 기금 자산의 투자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운용 업무는 기금운용부가 하고,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는 기금관리부가 수행한다.
 - 자산 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자산 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담당자는 그에 관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2 의사결정구조



5.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5. 1 목표수익률

- 가. 목표수익률이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에 목표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 나. '18년도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전체 목표수익률은 1.82%로 한다.
- 다.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현금성과 유동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목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1.82%로 설정한다.
- 라. 중장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평균 중장기 투자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기대수익률에 중장기자금의 실적형상품의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2.43%로 설정한다.

5. 2 허용위험한도

- 가. 전체자산의 허용위험한도(시장위험허용한도)는 향후 1년간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 할 확률을 2.0% 이내로 통제한다.

1년간 Shortfall Risk(원금) ≤ 2%

나. 단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

- 유동성 위험허용한도는 단기자금이 향후 1년 동안의 순지출액을 95%의 신뢰수준에서 충당 가능하도록 최소 단기자금의 규모를 설정한다.
- 시장위험한도는 향후 1년간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 할 확률을 0.1% 이내로 통제한다.

다. 중장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

- 시장위험한도는 향후 1년간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 할 확률을 5.0% 이내로 통제한다.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 가. 수입과 지출 시기, 규모,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를 산정한다.
- 나. 자금의 수입 및 지출항목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수입의 경우 부담금 및 출연금 수입, 주파수 할당대가, 융자금 회수, 여유자금 회수, 정부내부 수입, 자산운용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출은 사업비(융자 제외), 사업비(융자), 기금 운영비, 여유자금 예치, 정부내부 지출, 기타 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다. 적정 단기자금 규모 설정
- 진흥원은 충실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 기금의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 ① 1단계 : 기금의 연말 보유잔고와 해당연도 월별 자금 수지계획을 작성하여 총 운용규모를 산출
 - ② 2단계 : 수지차에 의한 총 운용규모의 만기별 배분 과정을 통하여 단기자금 규모와 중장기자금의 규모를 배분
 - ③ 3단계 : 과거 5년간의 월별 수입/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계획 순지출 대비 실제 순지출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90%의 목표수준으로 적정 유동성 운용 규모를 추정
 - 기금의 총 운용규모 산출, 만기별 배분과정, 적정 유동성 추정을 근거로 2018년도 자금운용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억 원)

구분		운용기간	규모	비율	
단 기 자 금	현금성자금	사업대기성	3개월 미만	282	
		적정유동성		82	
	유동성자금	사업대기성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35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51	
소 계			1,050	99.0%	
중장기자금		1년 이상	10	1.0%	

총 계	<u>1,060</u>	100%
-----	--------------	------

라. 운용자산의 분류

- 운용자산은 만기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인 “단기자금”과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 단기자금 중 자금 집행을 위해 보유하는 만기 3개월 미만의 자산을 “현금성 자금”,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보유하는 만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산을 “유동성자금”이라고 한다.

마. 현금성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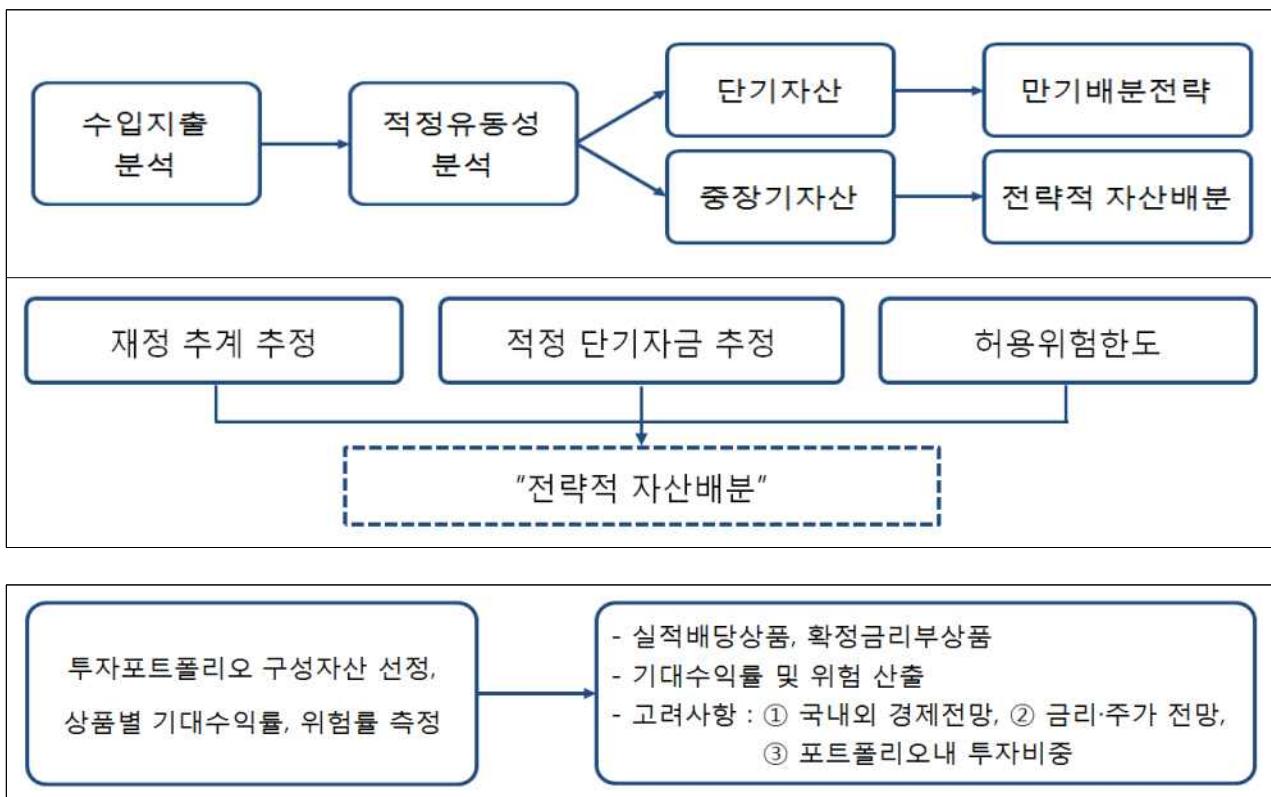
- 현금성자금은 운용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 한다.

7. 자산배분의 원칙과 절차

7. 1 자산배분 원칙

- 기금은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 자산을 배분한다.
- 기금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기자금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설정된 중장기자금의 기대수익률과 허용위험 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자산을 배분한다.
- 기금의 자산배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금의 자산배분 절차 >



7. 2 자산배분 기준

- 기금의 목표수익률 1.82%를 초과하고, Shortfall risk 2.00%이내를 만족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며, 99%신뢰수준의 연간 사전적 %VaR는 2.22%로 설정한다.

구분		목표비중	허용범위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u>34.3%</u>	$\pm 15\%p$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u>41.0%</u>	$\pm 15\%p$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u>23.7%</u>	$\pm 15\%p$
소계		<u>99.0%</u>	$-15\sim+1.0\%p$
중장기 자금	확정금리형	<u>0.5%</u>	$-0.5\sim+15\%p$
	채권형	<u>0.4%</u>	$-0.4\sim+10\%p$
	주식형	<u>0.1%</u>	$-0.1\sim+0.1\%p$
소계		<u>1.0%</u>	$-1.0\sim+15\%p$
총계		100%	

-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자산 배분은 주식형 상품에 대한 상한비중(5%)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장은 월간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 및 투자 분석을 통해 자산배분 기준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3 투자대상 자산군 및 투자제한 사항

가.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 기금의 투자 가능한 자산군, 상품 및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 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확정금리형 상품 예치

② MMF, MMDA, RP, CD 등에 대한 투자

③ 연기금투자풀 예치

④ 신용등급 AAA~AA-의 채권 매입(CP, 전단채는 A1~A2+)

⑤ 원금보존추구형(ELB, DLB, ELD 포함) 수익증권

⑥ 수익증권(ELS, ELF 등 포함) 매입

⑦ 신용등급 AA-미만의 채권(CP, 전단채는 A2+미만) 및 주식 매입

⑧ 그 밖에 대체투자 및 파생상품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운용

- 기금의 기간별 운용자금 분류에 따른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상품
단기 자금	현금성자금	3개월 미만	MMF, MMW, MMDA 등 수시입출금 상품
	유동성자금	3개월 이상 ~ 1년 미만	수시입출금 상품,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국공채, 금융채, 연기금투자풀 등 실적형상품
중장기자금		1년 이상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연기금투자풀 등 실적형상품, 주식, 채권, 대체투자, 파생상품

나. 투자의 제한

- 기금은 다음의 자산 또는 상품에 대한 투자(간접투자 시 수익증권 편입을 포함한다)를 제한한다.

- ① 신용등급 A- 미만의 채권(CP 등은 A2- 미만 해당)
- ②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종목 등 지정종목
- ③ 불공정 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
- ④ 기타 원장이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산 또는 상품

8. 위험관리

8. 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가.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유동성 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지급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자금수지 계획 대비 실제의 표준편차 등 다양한 위험지표를 측정하고, 확률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한다.

나. 신용위험(Credit Risk)

- 신용위험이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 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 채권투자 가능등급 및 규모 설정, 합리적 평가지표에 의한 운용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한도 차등설정 등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다.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 운영위험이란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내부통제 미비, 부적절한 관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운영위험 관리를 위해 규정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라. 시장위험(Market Risk)

- 시장위험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월간단위 99% 신뢰수준의 시장위험을 측정 (Market VaR)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8. 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 가. 진흥원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부를 두며, 기금관리부는 부서 내에 위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 나. 기금관리부는 위험관리 실무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위험에 관한 측정 ·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재무리스크 관련 총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 ③ 그 밖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위험관리 담당자는 자산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상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상위 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3 위험관리 세부 방안

- 가. 기금운용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산운용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각 상품에 대하여 일별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기금운용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산운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분기별/반기별/연도별 관리를 실시한다.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9. 1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 가. 현금성 또는 확정금리형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기금운용부 내부인력을 통한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중장기자금은 수익성 향상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외부 자산운용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다. 원장은 외부위탁기관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원장은 사모단독펀드(일임투자) 방식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는 계약서에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 사항(자산운용 매니저의 교체, 포트폴리오 변동, 운용관련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한 주기적 보고 등을 포함함으로써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2 운용대상기관

가. 기금 자산의 운용이 가능한 은행권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은행)의 국내지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거래약관상 본점 보증면책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⑤ 체신관서

나. 기금 자산의 운용이 가능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9. 3 외부위탁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법

가. 외부위탁기관의 선정은 재무안정성, 운용조직 특성, 과거 운용 성과, 투자 및 리서치 프로세스, 위험관리 및 캠플라이언스, 제안수수료, 운용 전략의 부합성 및 실행방안,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기금 자산을 운용 중인 외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운용성과, 계약준수 여부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원장은 외부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자금의 추가 배정, 회수,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외부 위탁계약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손실허용한도, 성과 평가, 자산운용 변동사항(자산운용 매니저의 교체, 포트폴리오 변동, 운용 관련 시장 상황 변동 등)에 관한 정기적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 마.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유형 펀드의 업계 평균수수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덤팡입찰을 금지한다.
- 바. 실적형상품의 위탁기관 선정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률 보장 요구 및 이면합의를 금지한다
- 사. 원장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외부위탁기관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아. 원장은 외부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4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

- 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선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거래의 안전성, 금융상품의 특성, 기금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금융기관에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적정 유동성, 목표 수익률, 자산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 다. 원장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성과평가

10. 1 성과평가의 원칙

- 가. 기금 운용의 성과평가는 기금운용조직과 독립된 조직 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기금 운용의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고려하여 평가한다.

10. 2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 성과평가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공시기준에 따라 필요시 외부에 공개한다.

10. 3 성과평가의 기준

- 가.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수익률을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 나. 투자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조정수익률인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이나 샤프지수(Sharpe ratio) 등을 사용하여 성과 평가한다.

$$\text{정보비율(IR)} = \frac{\text{기준수익률(BM) 대비 연간 초과수익률}}{\text{기준수익률(BM) 대비 초과수익률의 연간 표준편차}}$$

$$\text{샤프지수(자산운용)} = \frac{\text{자산운용수익률 평균} - \text{무위험이자율 평균}}{\text{자산운용수익률 표준편차}}$$

- 다.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수익률	제공처
단기 자금	현금성 자금	1개월 미만	연기금투자풀 MMF 업계유형 평균 수익률	연기금 투자풀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CD(91일) 수익률	한국은행
	유동성 자금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확정금리형)	한은고시 신규취급액기준 6개월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6개월 이상 ~ 1년 미만 (확정금리형)	한은고시 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3개월 이상 ~ 1년 미만 (실적배당형)	매경BP종합 국공채 지수 (3개월 ~ 1년)	한국 자산평가
	확정 금리형	1년 이상	한은고시 신규취급액기준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채권형	1년 이상	국내	매경BP종합 국공채 지수 (1년 ~ 2년)
			해외	Barclay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중장기 자금	주식형	1년 이상	국내	KRX
			해외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혼합형	1년 이상	$\sum(\text{자산별 목표비중} \times \text{자산별 BM})$	
	대체투자	1년 이상	투자 자산군별 가격지수	Customizing
	전체 포트폴리오		$\sum(\text{자산별 투자비중} \times \text{자산별 BM})$	

- 원장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

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4 성과평가의 활용

- 가. 성과평가 시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분석하고, 종목 선정·신용등급·섹터선정·시장선정·매매능력 등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향후의 자산운용에 참고하며, 성과급 지급에 활용한다.
- 나. 성과평가기준에 따른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담당자등 기여자에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1. 감사 및 공시

- 가. 원장은 내부의 감사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① 연간자금운용계획의 이행상황
 - ② 자산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 ③ 그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은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등에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① 연간공시 : 자산운용지침, 연간 운용수익률, 연간 운용규모 등
 - ② 수시공시 : 그 밖에 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의결권 행사

- 가. 진흥원은 투자 자산의 보존과 기금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나.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기준과 유의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 가. 자산운용 담당자는 관계법령, 자산운용지침 및 제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담당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담당자 행위준칙」에 따라야 한다.

14. 부칙

- 이 지침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

자산운용 일일 점검표

자산운용 일일 점검표												
분류	유형	상품 유형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치 일자	만기 일자	예치 금액	평가금액(좌수) 또는 약정이자율	해지금액		BM 지수	비고
									금액	손익		

- ① 분류 :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자금으로 분류
② 유형 :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변동금리형)

- ③ 상품유형 : 정기예금, CD, MMF, MMDA, MMW, 표지어음,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혼합형 수익증권, 파생상품형 등
- ④ 금융기관 : 연기금투자풀을 포함하여 계약 금융회사 명을 기입
- ⑤ 계좌번호 : 숫자만 기입
- ⑥ 평가금액(좌수) 또는 약정이자율 : 실적배당형은 평가금액(좌수), 확정 금리형은 약정이자율 기입
- ⑦ 해지금액 : 해지일에만 작성
- ⑧ BM지수 : 실적배당형 상품의 BM 지수 기입(실적배당형 상품은 반드시 투자 전 벤치마크를 설정해야 됨)

【별지 제2호】

자산운용 점검표

자산운용 점검표 (분기/반기/연도)												
분류	유형	상품 유형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치 일자	만기 일자	예치 금액	해지(예상)			수익률	비고
								일자	금액	손익		

- ① 분류 : 현금성, 유동성, 중장기자금으로 분류
- ② 유형 :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변동금리형)
- ③ 상품유형 : 정기예금, CD, MMF, MMDA, MMW, 표지어음,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혼합형 수익증권, 파생상품형 등
- ④ 금융기관 : 연기금투자풀을 포함하여 계약 금융회사 명을 기입
- ⑤ 계좌번호 : 숫자만 기입

자산운용담당자 행위준칙

제1조(선관주의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독립성·객관성) 직원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윤리의식) 직원은 자산운용의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을 운용한다.

제4조(전문역량 제고) 자산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기이익 금지) 직원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물질적·금전적 반대급부를 받는 등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관계 회피) 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사유) 직원이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